KMA 대한의사협회
KOREAN MEDICAL ASSOCIATION
"국민을 위한 바른 의료, 대한의사협회가 함께 합니다"

우)04373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40 삼구빌딩 8F[http://www.kma.org]/전화 02-6350-6587/전송(02)790-8911
보험국 국장 김기성[6574] 보험급여팀장 백영기[6581] 팀원 장운형[6587] / E-mail: kma6350@naver.com

문서번호 대의협 제813-9041호
기안일자 2017. 12. 01.
수 신 각 시도의사회장, 각 학회장, 대한개원의협의회장, 각과개원의협의회장
참 조
제 목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(정정)

1. 관련근거: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7-219호(2017. 12. 1)

2. 위 호와 관련,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41조제3항 및 제4항,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5조제2항에 의한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-218호, 2017.11.30.)」을 정정고시 하였는 바, 이를 안내해 드리오니 귀 회 소속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3. 아울러 동 내용은 우리협회 홈페이지(상담실-무료보험상담실-보험고시) 및 보건복지부(정보-법령-훈령/예규/고시/지침)에 게제되어있습니다.

[변경내용]
○ 별지 12호 서식 → 별지 13호 서식

붙임 : 고시 개정문 1부. 끝.

대 한 의 사 협 회 장

"국민의 건강과 행복, 의협이 함께 합니다"